

ISSUE BRIEF

제04 - 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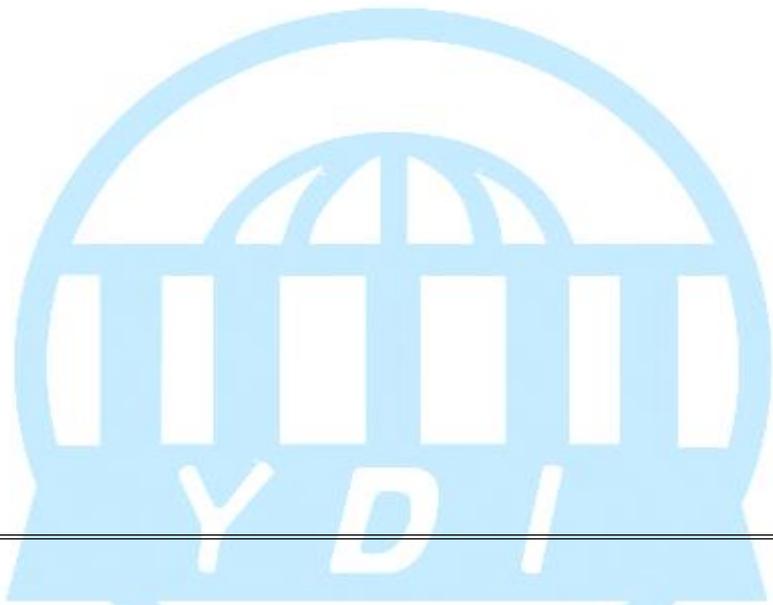
과거사 청산에서 현대사 정리로

- '과거사 청산' 주장에 대한 批判과 代案 -

2004. 11. 10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Hot Issue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目 次 -

1.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의 전체	1
2. 과거사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1) 주체의 문제	
2) 방법의 문제	
3) 대상의 문제	
4) 기준의 문제	
5) 목적의 문제	
6) 결과의 문제	
3.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6
4. 과거사 청산에서 현대사 정리로	9
■ 사례 ① :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	13
■ 사례 ② :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15
■ 사례 ③ : 문민정부의 현대사 연구 추진	17
[별첨] 現代史 調査·研究를 위한 基本法律案(한나라당案)	19

1.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의 전제

- '과거 청산' 혹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국 정치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때그때의 집권층이 과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임
 - 이 경우 역사 해석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차원을 내포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음
 - 이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논쟁은 한국 근·현대 역사를 놓고 벌어지는 일종의 '기억의 투쟁'임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뚜렷한 이념지향성을 보이고, 좌파·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입각, 과거사를 가해자 중심의 역사로 폄하함
 -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과거사 논쟁이 국가정체성(또는 정권 정체성) 논쟁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드러냄
 - 청산하고자 하는 과거사를 任意的으로 선별하는 징검다리식 역사관으로 전략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함

- 결국,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류세력의 교체를 겨냥한 일종의 사회운동 내지 문화혁명을 지향하고 있음

□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논쟁이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출발해야 함

국민 통합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전제 아래 역사의 功過를 엄정히 평가함으로써 국민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함

세계 지향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미래 지향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후대(後代)를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함

2. 과거사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주체의 문제

-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 자신이 직접 살아보지 않은 과거의 삶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 ‘살아남은 자의 위선은 없는지’, ‘우연히 늦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정권, 다시 말해 정치권이 과거사 진상 규명의 주체로 적합한가?
 - 특히, 국민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는 과거사 청산은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2) 방법의 문제

- 과거사 청산의 정치적 목적 그 자체를 청산해야 함
 - 주기적으로 여론이나 언론에 의해 반복되는 과거사 청산은 당사자를 ‘여러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치적·정략적이 아닌 학문적·객관적 접근을 통해 과거사 청산이 아닌 현대사 정리를 해야 함
 - 이번 기회에 미완의 과제인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를 획기적으로 지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쓰는 기회로 삼아야 함
 - 기록 발굴과 사료 보존을 위한 기구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정치권과는 무관한 **중립적·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현대사를 공정하게 조사·연구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대상의 문제

- 현대사 정리 범위를 무한대로 할 수는 없음
 -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측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어두운 과거가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조건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비판해야 함
 - 제국주의나 냉전체제와 같은 세계사적 요인을 감안해야 함
 - 행위자 개인 차원보다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4) 기준의 문제

- 세계사적 시각과 비교사적 관점을 도입해야 함
 -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객관적 비교와 함께 경쟁 상대인 북한과의 상대적 비교가 중요함
- ‘복합적’ 역사 인식이 필요함
 - 친일 對 항일, 친미 對 반미, 민주 對 독재 등의 이분법적 발상 뒤에 가려진 다양한 회색지대를 인정해야 함
 - 보통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온 일상의 불가피성을 수용해야 함
- ‘현실적’ 인간관 및 ‘긍정적’ 인간관이 필요함
 - 완벽한 인간은 없고, 누구나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헌법으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으며, 386세대 중 상당수도 한 때는 주사파였음

5) 목적의 문제

- 처벌이 목적이라면,
 - 시효, 연좌제, 일사부재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함
- 보복이 목적이라면,
 - 정치적 역사 청산이라는 악순환의 지속적 반복을 초래함
- 화해가 목적이라면,
 - 제3자 개입이 아닌 당사자 주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김대중 전대통령의 박정희 평가 및 기념사업 지원
박근혜 대표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사과
- 교훈이 목적이라면,
 - 정치권이 직접 나서지 말고 학계와 민간에 위임해야 함

6) 결과의 문제

- 부정 일변도의 自虐史觀은 북한에게 의도하지 않은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 세대에게 분절적 역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줌
- 또한, 갈등과 분열의 심화에 따른 국력 소진으로 다른 국가적 과제의 희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바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함
-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지난 50여년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방어’하고 ‘발전’시킨 역사임
 - 비록 과오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방어’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
 - 이러한 기반 위에서 80년대 말 민주화가 가능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음
- 결국 한국 현대사는 이승만(건국 세력)과 박정희(산업화 세력)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민주화 세력) 사이의 화해에 기반을 둘 때 세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통합적인 역사관이 마련될 수 있음
 - *이 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전(前)대통령의 만남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큼
- 세계사적 관점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 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함

-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제3세계의 어떤 국가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음
 - 분단 이후 경쟁 상대였던 북한과 비교해 볼 때도 등 모든 면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한국이 국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정착시킨 반면, 북한 지도부는 국가발전 보다는 개인승배에 열중하면서 인민을 도탄에 빠트렸음.
 -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에서만 평가가 인색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보는 '自虐史觀'이 득세하고 있음
- 여기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위 '자주파'의 역사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음
- '자주파'는 모든 정치적 정당성은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있으며, 바로 자신들이 그 적자이자 핵심이므로 자신들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갖고 있음
 - 이들은 남한은 '친일파'와 '민족분열 세력'이 세운 나라라고 북한은 '항일 및 자주·통일세력'이 세운 나라라고 봄

- 남한의 국가건설 과정은 분단국가 건설에 불과하며 통일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국가 건설이 완료되고,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인한 가운데 이루어진 親美從屬的 발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또한, 우리의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동맹보다는 북한과의 협력, 소위 '민족공조'가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자주파'의 脫美近中 노선이 얼마나 반시대적이고 낭만적인가 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東北工程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국가 건설-산업화-민주화 다음 단계의 과제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사에 대한 '진정한' 정리가 필요함

- 여기엔 국가건설과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자유주의 침해)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민주주의 침해)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방어하고 발전시켜온 데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누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함

- 즉 역사를 바라볼 때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우위를 내세우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가를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에 입각해 功과 過가 7:3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음

4. 과거사 청산에서 현대사 정리로

-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흑백논리에 입각하여 과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며, 과거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대상임

- 지난 역사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아닌 '현대사 정리'가 필요함

- 현대사 정리를 위한 3불가론

'역사뒤집기' 불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역사를 왼쪽 눈으로만 보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정략적 의도 불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 차원에서 전개되는 과거사 규명 이어서는 안 됨

보복 응징 중심 불가

진정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선동적 과거 규명, 연좌 제식 과거사 규명이 되어서는 안 됨

■ 현대사 정리(조사·연구) 추진 방안

1) 목 적

- 현대사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민족 정통성을 재정립 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의 자긍심과 화해를 이끌어 내 국민 통합을 이룩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 정략적 복선을 배제하고 진실의 규명과 화해를 지향함
- 단선적인 역사 청산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사인식에 입각해 역사의 밝은 면(功)과 어두운 면(過)을 다함께 살피는 균형 잡힌 역사관을 견지해야 함

3) 지켜야할 원칙

- 중립성 : 현대사 정리(조사·연구) 주체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함
-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는 역사 정리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불개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지켜져야 함
- 전문성 : 현대사 정리 주체의 전문성이 확립되어야 함
- 상호주의 : 현대사 정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명예회복과 보상)를 분리해야 함
- 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4) 추진 방법

-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정리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 설치함
- 위원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사로 선정하되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함(단, 친북 이적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연루된 인사는 배제함)
- 위원회에 '현대사연구소'를 두어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3년 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함
- 조사·연구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5) 조사 범위 및 대상

- 범위 : 일제 강점기(친일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은 제외)부터 광복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까지
- 대상 : △ 항일독립운동 △ 해외동포사 △ 국가 공권력의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 등

*현대사 정리의 범위와 대상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극우적 편향 뿐 아니라 극좌적 편향도 진상 규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거사 규명이 될 것임

6) 기타

- 피해 구제는 진실 규명과 별도로 일정한 연구 조사가 진행된 후 '민주화보상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신원회복, 명예회복, 보상 등을 추진



여의도연구소

■ 사례 ① :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

□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크게 폄박받았던 인물임

- 66년 문화대혁명 당시 등소평은 유소기와 함께 당내 走資派로 몰려 中南海에 연금 당함
- 68년 중국공산당 8기 12중 전회에서 모든 당직에서 파면됨
- 69년부터 73년까지 강서성의 트랙터 공장으로 추방되어 육체 노동에 종사함
- '73.3. 임표 사건을 계기로 부총리에 복귀, 재기에 성공했으나, '76.1. 주은래가 사망하고 그 해 4월 5일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자 배후인물로 지목돼 다시 당내외 모든 직위에서 파면됨
- 한편, 등소평의 장남 등박방(鄧樸方)은 68년 홍위병들에 의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실험실에 감금당하자 죽음을 피해 4층에서 수도관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 반신불수가 됨

□ 그러나 등소평은 1978년 정권을 장악하여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모택동 격하운동 등을 전개하지 않음

- 모택동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기는 했으나, 모택동의 功은 7이고 過는 3이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킴

□ 등소평의 모택동 재평가

- 공산당은 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모택동 동지의 역사적 지위와 모택동 사상”을 채택함

- “... 모택동 동지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이며 전략가요 이론가이다. 그가 비록 문화대혁명 중 엄청난 착오를 범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일생에서 본다면 중국혁명에 대한 공적은 과실에 견주어 훨씬 크다. 그의 공적은 1차적인 것이고, 그의 과실은 2차적인 것이다.”
- 1993년 12월 26일 모택동 탄생 100주년을 맞아 덩소평은 “만일 毛주석이 없었다면 우리 중국인은 아직도 암흑 속에서 긴 시간의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고 발언함
- 이처럼 덩소평은 모택동의 공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모택동의 역사적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통합의 정치를 실행함
- 일반 국민들 역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나 모택동은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 추앙받음

□ 덩소평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통합과 정치적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원모심려(遠謀深慮)에서 나온 것임

- 만일 덩소평이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처럼 모택동 격하운동을 펼쳤다면 정치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이룩하지도 못하였을 것임

☞ 시사점

- 덩소평의 중국판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민생 안정)을 위한 작업임
 - 미래 건설(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적 원한을 초월하여 모택동을 재평가함

■ 사례 ② :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 배경 및 추진과정

- '94.5 만델라 대통령 취임 후 과거 백인(16%)이 흑인(84%)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인해 자행된 살인, 고문,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동시에 흑과 백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함
- '95.7.25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권은 '국가통합 및 화해촉진법'을 제정함
- '95.12.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투투 주교(위원장)와 17인의 위원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를 구성하고 산하에 3개 위원회(△ 인권침해위 △ 사면위 △ 보상 및 명예회복위)를 설치함
- 동 위원회의 활동은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해 인사·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함

□ 활동 결과

- '60.1~'93.12.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접수된 진정 사건들은 인권침해위에서 1차로 걸러진 후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함
- 약 3년(35개월) 동안 2만 1,300여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약 305만 명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냄

□ TRC 활동의 성격

- 국민적 합의 :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조사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들이 적극 협력하였음
- 독립성 :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 행정부로부터 독립함
- 상호주의 : 가해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최대한 존중함
- 포괄성 :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조사방법을 총동원함
- 투명성 : 위원회 구성, 자료 수집, 청문회 실시, 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함

☞ 시사점

- ‘망각에 대항한 기억의 전쟁’으로 불리는 TRC 활동은 진상 규명은 철저히 하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 보다는 사면과 화해를 추구했음
- 당시 야당(국민당)이나 백인들도 TRC 활동에 적극 동의하여 **국민적인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었음**
 - 일부 백인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가해자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백인들도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희망
- 피해자(진실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흑인)와 가해자(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장악한 백인)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묘한 타협 모델이란 평가

- 다만,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때,
 - △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했던 점
 - △ 조사 시기가 흑인정권 수립 직후였던 점
 - △ 조사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았던 점
 -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던 점
 - △ 조사 대상이 흑·백 차별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로 단선적이었던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사례 ③ : 문민정부의 현대사 연구 추진

□ 취지

-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현대사 연구 추진함

□ 경과

-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 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97.2.1-99.1.31)로 대통령령으로 설치
- 연구수행 기구로 '현대사연구소' 설립 운영
 - 순수 학술기관으로서 현대사 연구 중심축 형성, 사료정보센터 기능 병행
 - 199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로 설치, 1999년 3월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

□ 주요 활동

- 설립년도인 97년에는 ‘해방이후 15년사 연구’에 주력함
 - ‘해방정국과 미소군정’ 등 8개 주제에 30개 과제를 연구함
- 2차년도인 98년에는 ‘60~70년대 역사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대함
 - ‘1960년대의 사회정치변동’ 등 12개 주제에 52개 과제를 연구함
- 기타 활동으로 자료조사사업, 교육사업(시민교양강좌 등), 출판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운영함

□ 1999년 3월 동 연구소를 폐쇄하면서 9개 정책과제 건의

- △ 문화지도 작성
- △ 해외 한국학 문헌목록 기초조사
- △ 해외 독립운동 사적 보존
- △ 한민족 역사의 날 기획
- △ 국사교육 현황과 문제점
- △ 국가기록물 보존제도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 △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
- △ 외국 소장 한국관련 자료 현황 및 활용방안
- △ 현대사 자료 수집과 유관기관의 공동 활용 방안 등

[別添]

現代史 調査·研究를 위한 基本法律案(한나라당案)

제안 이유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여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더 이상 과거사에 얽매어 후대를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과거사의 정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전제위에서 역사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민족정기와 국가 기강을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전체의 자긍심과 화해를 이끌어 내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과거를 조사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양하고, 미래를 위한 과거의 진실규명과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천명함(안 제1조).
- 나. 이념과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현대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 원칙”과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불개입의 원칙”, “화해와 통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 다. 조사·연구대상에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와 학살, 친북·이적활동도 포함시킴(안 제1조 및 제3조).
- 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

합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한민국학술원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은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광복회, 역사학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하여 학술원 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은 특정이념과 정파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50인 이내의 직원으로 현대사조사연구소를 두고 연구기획조정실, 독립운동조사연구실, 해외동포사조사연구실, 국가공권력남용조사연구실, 친북이적조사연구실에서 각각 해당 실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과거사의 방대함과 자료의 멸실 등 조사연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6년간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연구가 이뤄지도록 배려함(안 제9조).
- 사. 조사대상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안 제25조, 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및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유린

과 폭력, 학살, 의문사와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을 조사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조사·연구의 목적과 주체·기구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다.
2. 과거사의 규명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역사는 청산이 아닌 승계를 전제로 하며 이분법적 발상을 지양하고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조명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개입의 원칙을 적용하며 당사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항일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결성하거나 전투를 하는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한 행위
3.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그 밖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에 반대하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저항한 행위

②이 법에서 “해외동포사”라 함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며 한민족 이주·정착에 공헌하고 한민족의 우수성을 저술, 과학기술발견과 발명, 음악

활동, 기업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진 행위”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폭력행위로 현저한 피해를 보거나 사망 또는 의문의 죽음으로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2조1항에 의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한 행위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및 제7조(찬양·고무등)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한 행위
3. 제4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테러행위로 현저한 피해를 보거나 사망 또는 의문의 죽음으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건 및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
4. 6.25사변을 전후하여 북한정권에 의해 민·관·군이 납북되거나 살해된 사건 및 남로당 등 빨치산운동과 관련된 자와 이에 협력한 자의 행위
5. 해방전후 또는 6.25사변을 전후하여 자진 월북하거나 납북된 후 전향하여 북한정권의 요직에 있었거나 북한정권의 이념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행위자

⑤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표면상으로는 민주화와 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북

한정권의 이념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거나 자발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가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죄행위에 이르는 행위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현대사정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의 인력 파견과 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의 설치) 현대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 등)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사진상 조사·연구대상 및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행위의 조사범위 결정
3.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대상자관련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물건의 열람 요구
4. 공직자와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및 진술서의 제출요구
5.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6.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및 현지조사
7. 조사대상자 및 그 행위에 대한 조사
8. 위원회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및 사료의 편찬
9.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광복회, 역사학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인을 추천하여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되어야 한다.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⑥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⑧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6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및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관련기관의 임직원으로 활동한 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국회 보고) 위원장은 조사활동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30일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대사조사연구소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현대사조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연구소에 연구소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연구소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④연구소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연구소에는 50인 이내의 상근직원을 두어, 연구기획조정실과 항일독립운동조사연구실, 해외동포사조사연구실, 국가권력남용조사연구실, 친북이적조사연구실을 둘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소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조사대상의 가해자 및 피해자

2. 가해자 및 피해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단체 등 이해 당사자

3. 정당에 가입하였거나 정당원으로 활동한 자

⑥연구소의 직제, 복무, 직원임용규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연구소의 소장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위원, 소장 또는 직원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및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진상조사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조사 종료 직전에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조사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의사표시나 사실관계 규명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9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그 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6월전까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제33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
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
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⑥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SSUE BRIEF 제04-05호

과거사 청산에서 현대사 정리로

2004년 11월 10일 인쇄

2004년 11월 10일 발행

발행인 박세일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기계회관 신관 3층